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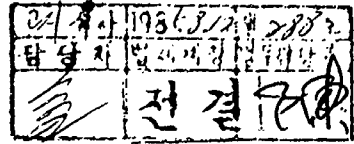




제 2 안
수신 서울특별시장
참조 공보관
제목 개정고시 시보 게재 요청
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상에서의 금지 행위에 대한 고시가 개정되었으니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개정고시 1부. 끝.

제 2 안
수신 수신처참조
제목 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상에서의 금지 행위에 대한 고시 개정고시 "보고" "통보" "아답"
도로교통법 제63조에 의하여 도로교통법에 의한 제한지시 에 관한 고시(서울특별시 고시 제693호, 62. 8. 1)를 별첨과 같이 개정하였 기 "보고" "통보" "아답" 합니다.
첨부 : 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상에서의 금지행위에 대한 고시(서울특별시 고시 제 호) 1부. 끝.
수신처 : 내무부, 치안본부, 기획과, 교통과, 서울특별시, 서과 68 - 79, 서 1 - 23 대 1 - 11, 관계관, 운수업체

서울 특별시 고시 제 호



도로상: 예서의 금지 행위에 대한 고시

도로 교통법 제 63조<sup>3항 1호</sup>에 의한 도로상에서 위해 방지를 위한 금지 행위를 다음과 같이 고시 한다.

1985. 8 . 12.

서울 특별시장

도로상에서 위해 방지를 위한 금지 행위

누구든지 도로 상에서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도로 상에서 세차, 또는 제차의 수리 행위  
단 잠시 손을 보는 정도는 제외한다.
2. 야간에 등화장치가 없는 자전거를 승차 운행 하는 행위
3. 자전거역 2인이상이 승차 운행 하는 행위
4. 양손을 놓고 자전거를 승차 운행 하는 행위
5. 우산을 펴들고 자전거를 승차 운행하는 행위
6. 자전거, 수화차는 차도의 삼각 하수구로 부터 1.5미터 이상 떨어져서 운행하는 행위
7. 자전거, 우마차, 수화차 의 적제용량 적한
  - 가. 자전거  
(1) 중량 50kg (2) 폭 50 cm (3) 길이 40 cm (4) 높이 60 cm
  - 나. 우마차  
(1) 폭 120 cm (2) 길이 300 cm (3) 높이 : 적제함으로부터 130 cm

다. 대형 및 소형 수화차

(1) 폭 대형 110 cm 소형 100 cm

(2) 길이 대형 200 cm 소형 150 cm

(3) 높이 대형 100 cm 소형 100 cm.

8. (폐지고시) 서울특별시 고시제 693호 (62. 8. 1) 는 이를 폐지한다.

9. (시행일) 이고시는 ~~85.~~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②